

광주지방법원 2021. 7. 14 선고 2021가단50721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소송대리인 D

변 론 종 결 2021. 7. 7.

판 결 선 고 2021. 7. 14.

주 문

1.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표 중 ‘증여인정금액’란 기재 각 돈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17,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 중 3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D 사이에 별지 표 ‘거래금액’란 기재 각 돈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1) 피고는 원고에게 25,096,8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E 주식회사는 D 및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80395호로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. 위 법원은 2014. 3. 31. ‘D,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,282,017원 및 그중 7,500,00원에 대하여 2014. 4. 1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’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고, 위 지급명령은 2014. 5. 3. 확정되었다(이하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‘이 사건 구상금 채권’이라 한다).

나. 원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양수하고 위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며, 위 승계집행문은 2019. 12. 10. D에게 송달되었다.

다.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명의의 계좌에서 아들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별지 표 순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합계 22,900,000원을 송금하였다.

라. 2021. 6. 29. 기준으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원리금은 25,096,877원(= 원금 7,500,000원 + 이자 등 17,596,877원)이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(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), 을 제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 존부

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,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피고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1)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. 그러나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,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(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).

2)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D이 피고에게 별지 표 중 순번 4, 11 및 12 중 2,000,000원 합계 5,400,000원을 송금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.

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① 피고는 D의 아들인 점, ① D의 어머니 G으로부터 D의 계좌로 위 각 금원이 송금된 후 수분 내지 수시간 이후 같은 금액이 피고에게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D이 피고에게 위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위 돈에 관하여 D과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.

3) 다음으로 D이 피고에게 별지 표 중 순번 1 내지 3, 5 내지 10, 12 중 500,000원, 13 내지 16 합계 17,500,000원(별지 표 중 ‘증여인정금액’란 기재 각 돈)을 송금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.

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① 위 금원에는 D이 수령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되어 있는 점, ② 위 금원에 대하여 피고는 D에게 판매위탁한 마스크의 판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, D 명의의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, 위 계좌에 어느 정도 금원이 예치되면 즉시 피고 내지 다른 친족의 계좌로 잔액 대부분이 이체되는 내역이 반복되는데, 이는 일반적인 거래대금 수수의 태양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, 위 17,500,000원은 D이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.

이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D이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들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나아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D이 위 각 돈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D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,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

사해의사는 추정된다.

다.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

그러므로 D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표 중 ‘증여인정금액’ 기재 각 돈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,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증여금액 17,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

3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이해림

D - 피고 송금내역

순번	거래일자	거래금액(원)	증여인정금액(원)	증여불인정금액(원)	비고
1	2020-07-10	2,050,000	2,050,000		
2	2020-07-12	1,150,000	1,150,000		
3	2020-07-14	210,000	210,000		
4	2020-07-16	3,200,000		3,200,000	
5	2020-07-20	700,000	700,000		
6	2020-07-26	1,830,000	1,830,000		
7	2020-07-31	3,100,000	3,100,000		
8	2020-08-13	5,000,000	5,000,000		
9	2020-08-21	800,000	800,000		
10	2020-09-09	300,000	300,000		
11	2020-09-15	200,000		200,000	
12	2020-09-25	2,500,000	500,000	2,000,000	
13	2020-09-29	1,340,000	1,340,000		
14	2020-10-18	250,000	250,000		
15	2020-11-04	100,000	100,000		
16	2020-11-16	170,000	170,000		
17	2021-01-12	500,000		500,000	송금내역 없음
합계		23,400,000	17,500,000	5,900,000	

1) 피고는 “피고와 D 사이에 별지 표 기재 각 돈에 관하여 체결된 26,854,800원의 증여계약을 25,096,87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”고 이 부분 청구취지를 기재하고 있으나, 별지 표 기재 각 돈의 합계가 23,404,800원에 불과하므로,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행한다.